2020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2020.10.20.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2020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1. 회부경위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2020.9.28. 양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0.10.7. 당 위원회로 회부됨에 따라 이를 검토하여 보고 드리는 것입니다(의안번호 제2509호).

2. 제안이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10조에 따라 2020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지방자치법」 제39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의결을 받아 시행하기 위함.

3. 주요내용

2020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 대상은 총1건으로, 공공보육 수요 충족과 구립어린이집 운영의 연속성 및 안정성 확보를 위한 구립 어린이집 부지 매입취득1건임.

4. 2020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 계상재산

○ 취득재산

일련번호	재산표시			추정가액(천원)(예정가격)	취득시기	취득사유	비고
	구분	소재지	면적(㎡)				
1	토지	신월1동 일대	230㎡ 내외	1,500,000	2020년 ~ 2021년	구립 어린이집 확충	
	건물		350㎡ 내외				

5. 검토의견

○ 2020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취득 1건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에 따라 2020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수립하고 「지방자치법」 제39조에 따라 구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제출된 것입니다.

구립 어린이집 부지 매입

【재산의 표시】

재산의 표시			취득 재산가액	비고
소 재 지	취득현황(㎡)		금액(천원)	
	토지	건물		
신월1동 일대	230 내외	350 내외	1,500,000	

- 신월 중앙교회에서 운영 중인 신월중앙어린이집이 2021년 2월 28일 운영 만료됩니다.

  이에 신월1동 관내에 소재한 토지 230제곱미터 내외, 건물 350제곱미터 내외의 토지 및 건물 1건을 취득하여 새로운 구립 어린이집으로 운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 사업의 근거는 「영유아보육법」 제12조(국공립어린이집의 설치 등)입니다.

- 총 사업비는 23억6천3백만 원으로, 재원조달은 국비 2억5천4백만 원, 시비 19억8천9백만 원, 구비 1억2천만 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계(천원)	국비	시비	구비
2,363,000	254,000	1,989,000	120,000

- 재원별 사업비는 매입비 15억 원, 리모델링 및 기자재 구매비 8억6천3백만 원입니다.

재원별 사업비 중 매입비인 15억 원이 동의 받아야 하는 공유재산 취득 예산입니다.

계(천원)	매입비	리모델링 및 기자재 구매비
2,363,000	1,500,000	863,000

8억6천3백만 원은 건물 리모델링 및 기자재 구매비로 재산 취득과 관련이 없는 공사비용입니다. 이 사업비는 공유재산 취득과 관련하여 동의를 받아야 하는 예산은 아니지만, 총 사업비에 포함되기 때문에 계획안에 같이 명기한 것입니다.

- 취득 물건의 소재지는 신월 1동 일대로 현재 적절한 물건을 고르고 있는 중입니다.
- 사업기간은 2020년 12월부터 2021년 5월까지입니다.

○ 종합의견

- 본 취득계획안은 「영유아보육법」 제12조에 근거하여 2021년 2월 말에 폐쇄 예정인 신월중앙어린이집을 대체할 구립 어린이집을 취득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의 근거, 사업의 규모와 재원조달 방안, 사업의 필요성에서 타당하다 판단합니다.

또한,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제10조에 따라 2020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지방자치법」 제39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의결·승인을 받고자 제출된 것으로 관련 상위법령을 따르고 있어 법적인 절차도 타당합니다.

다만, 신월중앙어린이집의 운영기간 2021년2월 말일까지로 예고되어 있기 때문에 사업 종료시점을 현재의 2021년 5월 보다 더 앞당길 필요가 있다 하겠습니다.

【관 계 법 령】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수립·변경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지방의회에서 의결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세워 그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관리계획을 수립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이 취소되거나 일부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2.4., 2015.1.20.>

□ 「지방자치법」

제39조(지방의회의 의결사항) ① 지방의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조례의 제정·개정 및 폐지
2. 예산의 심의·확정
3. 결산의 승인
4.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사용료·수수료·분담금·지방세 또는 가입금의 부과와 징수
5. 기금의 설치·운용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재산의 취득·처분
7.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의 설치·처분
8.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
9. 청원의 수리와 처리
10.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법령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사항 외에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의회에서 의결되어야 할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 「영유아보육법」

제12조(국공립어린이집의 설치 등)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공립어린이집은 제11조의 보육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1. 도시 저소득주민 밀집 주거지역 및 농어촌지역 등 취약지역
2. 삭제
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 지역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에 따라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할 경우 제6조제1항에 따른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에 같은 법 제35조에 따라 설치되어야 하는 어린이집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국공립어린이집으로의 운영에 찬성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3항에 따라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여야 하는 공동주택의 규모와 국공립어린이집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제10조(공유재산 관리계획) ① 구청장은 법 제10조 및 영 제7조에 따라 예산을 서울특별시 양천구 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에서 의결하기 전에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공유재산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세워 구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2011.11.15, 2015.10.30>